『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조성을 위한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정기감사 결과

인천광역시
http://www.incheon.go.kr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조성을 위한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정기감사 결과

Ⅰ 종합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0. 10. 4. ~ 10. 15.(10일간)

○ 감사범위 : 2008. 5월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전반

○ 감사반 편성 : 감사반장(전략감사팀장) 외 15명

Ⅱ 감사결과

1. 총 괄

1) 총괄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추징	회수	감액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36	25	9	2	13/3,555	4/46	3/65	6/3,444	8	-	-	8

2)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계	지적 유형별									
	인사·조직	일반행정	예산·회계	보상	토목	건축	전기	환경·청소	공원·녹지	지적·토지
36	3	4	7	1	3	5	2	2	4	5

2. 주요 지적사항

인사조직 계약직 채용계약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계약직 채용계약서 이행 미준수

2008년도 시 종합감사시 행정력 낭비와 업무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계약공무원들이 본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에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1월 이전에 담당부서에 해지를 신청하도록 하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손해배상 등의 조항을 채용계약서상에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계약직 공무원 △△△외 2인의 경우 1개월전 사직서 제출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채용계약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사직처리 하였음.

2.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연장은 계약직 당사자는 물론, 채용기관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가 필요한 안건임에도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어 채용연장 안건에 대한 심의 개선이 필요함.

1. 채용계약서 내용의 철저한 준수조치
2. 계약직공무원을 채용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추진

인사조직 계약직 법률자문의 외부기관 자문에 관한 사항

2009. 2. 27. 투자유치관련 법률자문 및 MOU 등의 검토와 청내 법률자문 및 계약서 검토, 소송관련 법률자문 및 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채용하였음. 2년여간 법률상담일지에 답변내용, 질의응답 등 부실하게 기록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법률자문 또는 시 법률고문을 이용하여 법률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 외부기관 법률 질의 등으로 2009년도 114백만원, 2010년 10월 현재 13건 107백만원을 집행하고 있음.

불필요한 외부자문 등을 자제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에 대한 활용 등을 담은 운영지침을 정하여 운영 추진

일반행정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부적정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2008. 12. 26일자로 (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전, 전략 및 Road Map수립, 프로세스 정비, BSC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여 핵심업무 프로세스 및 표준화 등에 대한 컨설팅과 성과관리시스템, 프로세스관리자시스템, 사업관리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 콘텐츠관리시스템 등 5개 시스템에 대하여 2009. 8. 27 준공하였음.

그러나, 2010년도 운영상황은 5개 시스템 중 1개 시스템을 사용하며 그 내용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 사업 104건의 입력·관리 등 일부만 사용하고 있으며 市 PM사업 66건과 추진 상황을 중복 관리함.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안정화를 위한 기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용역준공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활용이 부실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부적합한 BSC시스템 도입, PM관리기능 중복, 타 시스템(IN2IN)의 연계성 미비 등으로 활용이 저조함.

1.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활용방안 및 대책 수립
2. 시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PM 관리시스템과의 중복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이중 관리 배제 등을 위한 대책 마련

일반행정 IFEZ 도시경관자문위원회 운영 부적정

「경관법(제정 2007.5.17)」제23조 내지 제24조에서 광역시에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협정의 인가 등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

운영 토록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제1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심의토록 하고 있음.

2008년도 시 종합감사결과 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자문위원회" 에 대하여 법령(조례)에 근거한 운영을 요구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법적 근거없이 자체 경관자문 위원회를 부적정 하게 운영하고 있음.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IFEZ도시경관자문위원회의 기능을「경관법」 규정에 의한 인천시경관위원회 등을 활용한 심의 및 자문으로 전환 추진

일반행정 송도글로벌캠퍼스 추진대책 미흡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위한 사업용 부지 매매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주)에서 시행한 수익용 부지 감정평가 금액과 인근 유사지역 내 부지의 감정평가 금액을 감안하여 매각가격을 산정하였음.

총 1조 700억원이 투자되는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비 중 민간부문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동주택 분양사업이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으로 재원조달이 전무한 실정이며 2011년 8월 준공 되는 글로벌캠퍼스 수용인원 2,000명에 비하여 2011년 9월 개교 예정인 1개교(뉴욕주립대) 학생은 초기 100명만이 예정되어 외국대한 유치대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함.

1. 관련 법에 의한 감정평가를 통한 토지매각과 연체자 체납관리 등 철저
2. 민간부문 자금조달 대책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해소되도록 지원 및 관리 강화
3. 2011년 8월 준공예정인 시설의 활용을 위한 외국 대학교 유치 및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등 대책 수립 철저

예산회계 용역심의 사전절차 미이행

각종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인천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심의를 받어야 함.

u-City과에서는 "IFEZ u-City 홍보영상물 제작"사업의 용역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성장산업유치과는 "세계적 수준의 동아시아 의료바이오 허브 구축용역(2009.4월~2009.7월)" "국제 BIT-PORT 조성사업 전략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2009.12월~2010.7월)"의 용역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음.

1. 예산편성시 사전에 용역심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철저
2.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관심(주의) 촉구

예산회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65호)에 의하면 공모된 제안서의 평가는 7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가점수는 객관적 평가 20점, 주관적 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되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가하여야 함.

그러나, u-City과에서는 2009. 3. 24. IFEZ u-City 홍보영상물 제작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평가위원 4명만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주관적 평가점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준 점수인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처리하는 등 계약자 결정을 부적정 처리함.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관심과 주의 촉구

예산회계 송도 1공구어민보상용지 기반시설 건설공사 선금관리 부적정

"송도1공구 어민보상용지 기반시설 건설공사"의 공동도급 대표사인 ○○○○○(주)에 대한 기성대금 64,382,205원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 되자 지급을 보류하고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였으나 ○○○○○○(주)에서 재정상태 악화를 이유로 동 공사의 미정산 선금 잔액 214,033,660원이 남은 상태에서 공사포기서 등을 첨부하여 잔여 공사분 출자지분을 변경 요청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해 “선금을 지급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선금잔액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보관 중이던 ○○○○○(주)의 기성금 64,382,205원을 채권압류자를 위해 △△△△법원 △△지원에 2008.10.23. 공탁하여 2009. 2월 배당 완료됨.

○○○○○(주)의 선금 214,033,660원과 이자를 보증사인 ○○○○에 2008. 9월 청구하였으며 ○○○○○에서는 선금 214,033,660원 중 149,651,455원을 대급하고 잔여 선금은 기성금 64,382,205원으로 상계를 주장함.
○○○○○(주)의 재산 조사 및 압류 후 현재 배당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나 배당 금액이 적어 전부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실정임.

○○○○○(주) 선금 미정산분에 대하여 공동도급 지분 변경한 ○○○(주)의 선금 추가보증 등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토 목 자전거도로 포장단면 개선

송도개발과에서 공사 중인 자전거 전용도로는 국토해양부「자전거 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2009)」이전에 설계된 포장단면으로 표층은 유색 투스콘, 기층은 잡석, 모래 구조이며, 용유무의개발과의 사업은 표층 칼라 투수아스콘, 중층 투수아스콘, 보조 기층의 구조로 설계됨.
따라서「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2009)」및「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0)」에 적용하여 자전거도로 포장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깔인 무색을 사용한 변경시공이 필요함.

관련 지침에 의하여 자전거도로 포장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깔을 사용하여 사업비 2,184,272천원을 감액설계

토 목 설계 경제성 검토(VE)결과 적용 부적정

송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턴키공사로 계약체결 및 추진과정에서

하수처리시설의 수조내부 방수는 기본설계 등에 내부 방수로 되어 있으나 설계VE 시행을 위한 도면에는 수조 천정부 및 벽체 H.W.L (-)1.5m까지 (분립막조, 용존산소저감조는 전체면적)로 제출하였음.
기본설계서 등에 비추어 실시설계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찰안내서 규정에 의거 실시설계적격자 책임 하에 이를 보완 하여야 함에도 전체방수로 시행 변경을 성능향상으로 인정하여 493,900천원을 부적정하게 반영함.

설계VE 시행 결과에 의한 감액 277,420천원과 우리시 지방건설기술심의 및 별도 발주처 등 검토에 의한 증액 779,460천원의 설계변경 사항 적용시 증액은 할 수 없고 감액은 할 수 있음에도 증·감액을 합산하여 나타난 증액 502,040천원의 사유를 들어 설계VE 검토결과를 감액하지 않았음.

1. 부적정 설계반영, 설계경제성 검토(VE) 등 관련 771,320천원 감액
2.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주의 촉구

토 목 기반시설 건설공사 과다설계

1. 우수관 수밀검사 반영 부적정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및「하수도공사 시공 관리요령」에 따르면 하수관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밀검사는 오수관거, 합류관거에 대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공사 등 7건의 공사에 우수관 수밀검사가 반영되어 있는데도 설계변경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2. 과재제거 물량 과다 산정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 중 2,104m 구간에 연약지반처리를 위한 선행 재하쌓기후 과제제거 물량에 공제 대상인 침하량 10,318㎥가 반영되어 있는데도 설계변경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과다하게 설계된 공사비 8건 121,149천원을 설계변경 및 감액조치

건 축 존치기간경과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소홀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전까지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하지 않거나 존치기간의 연장 불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철거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가설건축물 등 140건의 존치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존치기간 연장 또는 철거 등 사후관리를 소홀함.

1.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정비계획 및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 추진
2.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주의 촉구

공원녹지 녹지조성사업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소홀

1. 송도 중앙대로 중앙분리대 1공구 녹지조성사업 감독 소홀

"송도 중앙대로 중앙분리대 1공구 녹지조성 사업" 설계 변경을 시행하면서 관람데크 1, 관찰데크 1, 휴게데크 5, 목교 2개소 등에 대하여 마구리 폭 등의 수량 산출을 중복 계상하고 지하철 비상계단 조경석 재료비 단가를 조달청 가격보다 고가의 단가를 적용하였음.

2.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소홀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건축허가증 교부 전에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9건 29,254천원이 체납되고 이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를 취소하거나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 등에 의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징수를 소홀히 함.

1. 중앙분리대 1공구 녹지조성사업 중 과다 계상된 12,342천원 감액 추진
2. 체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9,254천원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지적·토지 불법농지전용 방치 및 조사 소홀

불법으로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중구 운남동 ○-○번지외 1필지(2,261㎡) 단독주택 등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방치 및 행정처분(이행강제금: 6,527,000원)을 하지 않았으며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를 감사일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음.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 등 법적 조치 시행

공원녹지 송도 23호 근린공원 자전거 도로 단면 부적정

시공 중인 송도 23호 근린공원의 단면을 보면 노상면에 보조기층 15cm, 투수탄성기층 10cm, 미끄럼방지포장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투수콘크리트 포장면이 마찰계수를 충족하여 상부에 미끄럼방지 포장이 불필요함에도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설계에 반영하고 감사일 현재 관급계약(330,024천원)이 된 상태이며 포장재로 고가의 탄성콘을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설계 시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반영하였음.

1. 투수탄성콘크리트 상부에 불필요한 미끄럼방지 포장은 감액 조치
2. 투수탄성포장재는 현장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용여부 결정 추진